

작성일자 년 월 일
작성자 (인)

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

* 별첨 1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산업재해)

구 분	내 용	응 답	응답
관련법 위반	최근 3 년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	없음	
		1 회	
		2 회	
		3 회 이상	
소송 여부	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	없음	
		1 건	
		2 건	
		3 건 이상	
사망 여부	최근 3 년내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(3 년 누적기준)	없음	
		3 명 이하	
		10 명 이하	
		11 명 이상	
산재 부상	최근 3 년내 산업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(3 년 누적기준)	10 명 이하	
		30 명 이하	
		50 명 이하	
		51 명 이상	
산재 질병	최근 3 년내 산업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(3 년 누적기준)	5 명 이하	
		10 명 이하	
		20 명 이하	
		21 명 이상	
근로자 연령	전체 근로자 중 60 대 이상 근로자 비중	20% 미만	
		30% 미만	
		40% 미만	
		40% 이상	
근로성숙도(1 년)	전체 근로자 중 1 년 미만 근로자 비중	10% 미만	
		15% 미만	
		20% 미만	
		20% 이상	
직원 안전교육	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교육시간	3 배 이상	
		2 배 이상	
		1 배 초과	
		1 배 이하	
외주 안전교육	하청직원 작업 전 (1) 안전교육 실시, (2) 점검표 작성	실시 O, 작성 O	
		실시 O, 작성 X	
		실시 X, 작성 O	
		실시 X, 작성 X	
야간야외작업	자율점검표 작성 및 긍정 비중	긍정비율 90% 이상	
		긍정비율 70% 이상	
		긍정비율 50% 이상	
		긍정비율 50% 미만	
하청 근로자 비중	전체 근로자 대비 외부하청 근로자 비중	10% 미만	
		20% 미만	
		30% 미만	
		30% 이상	
안전보건점검횟수	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*	1 년에 4 회 이상	
		1 년에 3 회	
		1 년에 2 회	
		1 년에 1 회	

* 자율점검표 안내

- 고용노동부 제공 자율점검표를 우선 적용하고, 해당 업종은 업종우선
 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
 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
 - 건설업 자율점검표
 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
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
-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 개 이상인 것만 인정
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

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

* 별첨 2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시민재해)

구 분	내 용	응답	응답
관련법 위반	최근 3 년내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	없음	
		1 회	
		2 회	
		3 회 이상	
소송 여부	현재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	없음	
		1 건	
		2 건	
		3 건 이상	
사망 여부	최근 3 년내 시민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	없음	
		3 명 이하	
		10 명 이하	
		11 명 이상	
시민 부상	최근 3 년내 시민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	10 명 이하	
		30 명 이하	
		50 명 이하	
		51 명 이상	
시민 질병	최근 3 년내 시민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	5 명 이하	
		10 명 이하	
		20 명 이하	
		21 명 이상	
조직 및 인원	중대시민재해를 전담하는 조직 여부	전담부서, 전담직원 ○	
		겸직부서, 전담직원 ○	
		겸직부서, 겸직직원 ○	
		부서배정 /직원배정없음	
안전보건점검횟수	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*	1 년에 4 회 이상	
		1 년에 3 회	
		1 년에 2 회	
		1 년에 1 회	
모의훈련	응급사태 매뉴얼 보유 및 모의 훈련 실시	매뉴얼 X, 모의훈련 ○	
		매뉴얼 ○, 모의훈련 ○	
		매뉴얼 X, 모의훈련 X	

자율점검표 안내

1. 공공기관에서 만든 안전관리 점검표를 우선 적용

- 환경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원료, 제조물) 점검표
- 국토교통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시설물) 점검표
-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세부점검표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 10 호 서식
-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 점검표
- 고용노동부 제공, 자율점검표
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
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
- 건설업 자율점검표
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

2.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 개 이상인 것만 인정 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

※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 목적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